

의안번호 제1146호

검 토 보 고 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경과

- 제출 일자 : 2015. 6. 30.(화)
- 제출 자 :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 : 2015. 7. 1.(수)
- 위원회 심사 : 2015. 7. 8. ~ 7. 15.

2. 결산의 개요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 결산의 기능

- 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
- 나. 집행부의 행·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계기
- 다.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 라.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 수단
- 마. 예산집행의 책임해제

3) 결산서 작성

-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3. 검토의견

-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괄로 먼저 세입부분임.
2014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3,138억원(일반3,033, 특별1,050)이며 전년도 2,913억원보다 7.7%인 2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3,324억원(일반3,171, 특별153)이며 수납액은 3,170억원(일반3,057, 특별113)으로 징수결정액의 95.4%가 수납되어 전년도 징수율 95.1%보다 0.3% 향상되었음. 미수납액은 145억원(일반106, 특별39)으로 전년도 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8억 5천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음.
-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6억 5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 3억, 행방불명 9천만원, 납세태만 14억 8천만원, 소송 및 재산압류 중 87억 8천만원임.
-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7천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2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6억 5천 만원임.
- 미수납은 전년대비 주요 증감 사유분석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세출부분임.

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139억 원이며 예산현액의 80.2%인 2,516억 원이 지출되었고,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명시 이월사업 29건 99억 8천만원, 계속비 이월사업 35건 248억 2천만원 등 총 64건 348억 원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 2건 9억 9천만원, 사고이월사업 1건 5억 3천만원, 계속비 이월사업 4건 16억 6천만원 등 총 7건 31억 8천만원임.

○ 이월사업비 총액은 379억 8천만원으로 예산현액 3,139억 원 대비 12.1%로서 지난해 11.1%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이월사업비의 과다는 세계잉여금의 과다로 이어지므로 정확한 세비추계와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불용액은 총 253억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3,139억 원의 8.1%이며, 일반회계 불용액은 229억 5천만원이고 특별회계 불용액은 23억 5천만원임. 이러한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조치 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 밖에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내역은 결산검사의견서 참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순세계잉여금=총 세입예산-총 세출예산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총 세입예산) 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총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1)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2)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이월재원 + 보조금 잔액)

2. 세계잉여금

한 회계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말한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두가지 원인이 복합되었을 때 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3.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된다.